

성남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의안 번호	1354
----------	------

제출년월일 2004. 3. 15.
제 출 자 윤춘모 의원 등 12인

□ 제안이유

-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포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골자

- 의회 의정포럼의 구성은 현직 의원을 당연직으로 함(안 제3조제1항)
- 원활한 의정포럼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둠(안 제3조제2항)
- 대표는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함(안 제3조제3항)
-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호와 같음(안 제4조)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2.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 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음(안 제5조제1항)
- 의정포럼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안 제5조제2항)
- 의제에 따른 초청 토론자의 수와 대상은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함(안 제5조제3항)
- 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 의정 포럼 개최비 등을 지원 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 공무원 및 현직 의원이 아닌 초청 토론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6조제2항)

성남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포럼활동(이하“의정포럼”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정포럼이라 함은 토론문화 정착과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상정립을 위하여 운영하기 위함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의회 의정포럼의 구성은 현직 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원활한 의정포럼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③대표는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의제)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
2.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및소집) ①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②의정포럼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의제에 따른 초청 토론자의 수와 대상은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의제는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실비보상) ①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 의정 포럼 개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공무원 및 현직 의원이 아닌 초청 토론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남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간사는 의정포럼 개최 후 15일 이내에 의정포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 시행사항) 이 규칙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